

보도시점 2023. 12. 20.(수) 09:00 배포 2023. 12. 20.(수) 08:30

[2023년 특허청 정책 돋보기]

디자인출원서 작성, 더 쉽고 편해진다

- 특허청,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시행(12.21) -
- 도면 식별항목 번호 체계 간소화 등 출원인 편의성 높여 -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출원인 편의성 제고를 골자로 하는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12. 21.(목)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디자인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에서 맞춰 출원서를 작성한 후 특허청에 제출해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출원서 기재항목과 출원서에 첨부하는 도면의 표현방식 등이 다소 복잡하고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도면 식별항목 번호 체계 간소화>

출원서에 첨부하는 디자인도면의 식별항목 번호 체계를 현행 두 자리 표시 방식에서 한 자리 표시 방식으로 간소화해 출원인이 불필요한 실수를 하지 않도록 했다.

< 디자인도면 식별항목 번호 체계 변경(예) >

변경전	변경후
[도면 1.1]	[도면 1]
[도면 1.2]	[도면 2]
[도면 1.3]	[도면 3]

<3차원 컴퓨터 모형화파일 형식 정비>

도면 대신 제출 가능한 3차원 컴퓨터 모형화파일의 형식도 대폭 정비했다. 현재 아이지이에스(IGES), 3디에스(DS), 디더블유지(DWG), 디더블유에프(DWF), 3디엠(DM) 등 5개 형식의 파일이 제출가능한데, 이번 개정을 통해 지금까지 출원인의 선호도가 가장 높았던 아이지이에스(IGES)는 그대로 유지하되,

나머지 형식은 기술적 특성은 동일하나 안정성과 호환성이 높아 현장에서 애용되고 있으며 세계지식재산기구 표준위원회(Committee on WIPO Standards)에서 권장하는 에스티피(STP), 에스티엘(STL), 오비제이(OBJ)로 대체했다.

< 3차원 컴퓨터 모형화파일 형식 정비 >

변경전	변경후	
아이지이에스(IGES), 3디에스(DS), 디더블유지(DWG), 디더블유에프(DWF), 3디엠(DM)	유지	아이지이에스(IGES)
	대체	에스티피(STP), 에스티엘(STL), 오비제이(OBJ)

<화상디자인 용도란 간소화>

화상디자인 출원 시 필수로 기재해야 하는 ‘화상디자인의 용도’ 란을 기존 ‘디자인의 설명’ 란과 통합해 일원화함으로써 출원이 보다 간편해지고 화상디자인 출원을 촉진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허청 구영민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번 디자인출원 방식 간소화를 통해 국내 디자인출원의 약 90%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출원 시 겪고 있는 불편이 상당부분 해소되는 한편, 심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거절이유 통지를 받는 경우도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허청은 앞으로도 언제나 현장의 눈높이에서 디자인제도를 설계하고 개선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한편, 보다 자세한 내용은 특허청 디자인심사정책과(☎ 042-482-8353)로 문의하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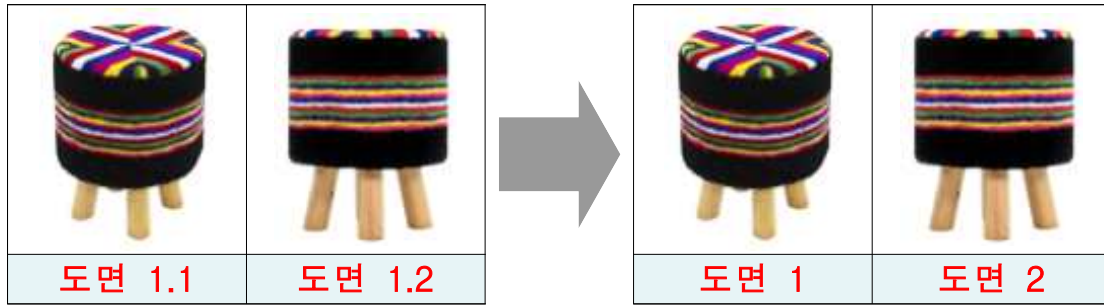
※ 붙임: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

담당 부서	상표디자인심사국 디자인심사정책과	책임자	과 장	문창진 (042-481-5331)
		담당자	사무관	김지훈 (042-481-83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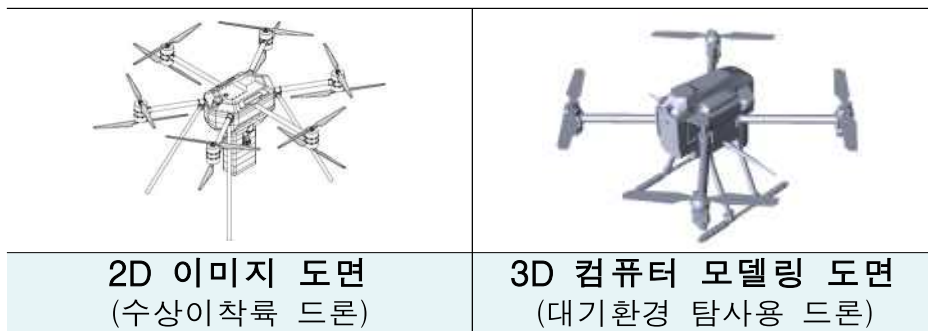
① 도면 식별항목 번호 체계 간소화

- (내용) 디자인출원서에 등록받고자 하는 디자인을 표현한 도면을 첨부해야 하며 첨부되는 도면마다 각각 식별번호를 부여함
- (개선사항) 현행 두 자리 표시방식(예: 도면 1.1)을 한자리 표시방식(예: 도면 1)으로 간소화하여 불필요한 실수 유발 방지



② 3D 컴퓨터 모델링파일 형식 정비

- (내용) 디자인출원서에 첨부하는 도면을 2D 이미지 파일(예: JPG) 대신 디자인 개발에 사용했던 3D 컴퓨터 모델링 파일을 그대로 제출 가능



- (개선사항) 안정성과 중립성 확보에 한계가 있는 파일 형식인 3DS, DWG, DWF, 3DM을 기술적으로 향상되고 호환성 높은 STP, STL, OBJ로 변경

* 세계지식재산기구 표준위원회(Committee on WIPO Standards)는 IGES, STP, STL, OBJ, U3D 등 5개 파일 형식을 권장

③ 화상디자인 용도란 간소화

- (내용) 정보통신기기에 표현되는 GUI 등과 같은 화상(畫像)디자인을 등록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용도(예: 주식거래 애플리케이션용)인지 출원서의 ‘화상디자인의 용도’란에 필수적으로 기재 필요
- (개선사항) 기존 기재 항목인 ‘디자인의 설명’에 화상디자인의 용도를 같이 기재하도록 출원서 서식 간소화